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3
----------	-----

2023. 4. 24.  
북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7.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13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북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4. 24.)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강을석 의원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강남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마련함(안 제3조)
-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역할·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 등(안 제12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관내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지반침하<sup>1)</sup>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반침하 방지와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주민의 공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중앙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2016.1.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17.11.21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2018.1.1.일자로 시행하고 있음

### 2 조례안 주요 사항 검토

#### 가. 목적(안 제1조)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 목적은 법 제1조<sup>2)</sup>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2)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음

## 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지하’, ‘지반침하’, ‘지하개발’, ‘지하시설물’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책무(안 제3조 관련)

- 안 제3조는 구청장에게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3조제1항3)의 규정을 인용한 내용으로 사료됨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 관련)

- 안 제4조는 구청장에게 법 제8조제1항4)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 제7조제1항5)을 준용하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법 제8조(시·군·구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 제1항및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영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

**마.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관련)**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법 제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안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안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안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 법 제34조제6)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12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음
- 또한 법 제34조를 살펴보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법 제34조제1항)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의무를 부과(법 제34조제2항)하고 있으며,
- 그 외에도 구청장에게는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법 제34조제5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례 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 6) 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4. 24.)

- 질 의 : 조례안 제4조제2항, 제3항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안전관리사항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중점관리시설이 몇 곳이나 있나
- 답 변 : 현재 우리 구에는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지정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질 의 :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있는 지하시설물이란 무엇인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현장조사 후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 시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가
- 답 변 :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7가지가 있으며,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난방시설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음. 시정조치 불응에 대한 구 차원의 강제 조치는 없으며, 공사 완료된 사항에 대한 것의 관리주체가 구로 되기 때문에 구에 조치 의무가 있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53호

발의일자 : 2023. 4. 24.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회

### 1.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항의 내용과 제목을 일치하도록 하고자 제7조 및 제1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수정함

### 2. 수정내용

- 위원회 구성 시 기준이 되는 성비 기준을 명시함(안 제6조)
- 조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7조)
- 조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1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 제목을 “위원장 등”에서 “위원장의 직무”로, 제12조의 제목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 -----</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u>구</u> <u>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u> <u>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u> <u>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u> <u>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u> <u>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제7조(위원장 <u>등</u>)</p>	<p>제7조(위원장의 <u>직무</u>)</p>
<p>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u>안전점검</u> 등)</p>	<p>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u>현장조사</u> 등)</p>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
----------	-----

발의연월일: 2023. 4. 7.

발 의 자: 강을석·복진경·손민기·김형대·  
황영각·우종혁·노애자·  
안지연·박다미·김현정·  
이동호·이향숙·김광심 의원  
(이상13인)

### 1.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강남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마련함(안 제3조)
-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역할·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 등(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  
별시 강남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  
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  
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  
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

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

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시·도 관리계획 또는 시·군·구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를」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군·구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부한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